

—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—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제안 이유

○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요소의 지원과 동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 골자

○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변경(제4조 제4항)

- 인력동원지원반 →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
- 재정지원반
- 건설수송지원반 →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
- 통신지원반 → 통신·전산지원반
- 보급지원반 → 보급·급식지원반
- (신 설) → 정부기능반

□ 검토 의견

○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

-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지원 및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
-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(대통령 훈령 제28호)에 맞게 도의 통합방위지원본부조직중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통합해 “인력·재정동원지원반”으로, 건설수송지원반을 “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”으로, 통신지원반을 “통신·전산지원반”, 보급지원반을 “보급·급식지원반”으로 하고, 정부기능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